

제 2011-BO-0152 호



안전인증서

와이즈산전(주)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99번지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결과 안전·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Temperature Indicating Switch

형식·모델/용량·등급/인증번호

형식·모델	용량·등급	인증번호
T990*	Ex d IIB+H2 T6 -20 °C ≤ Ta ≤ 60 °C 정격: 인증조건 3항 참조(뒤쪽)	11-AV2BO-0152X

인증기준

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10-36호)

인증조건

(뒤쪽)참조

2011년 6월 7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

인 증 조 건

1. 제조공장: '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99번지' 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

2. 제품개요

본 제품은 Temperature Indicating Switch로 탱크 및 배관 등에 설치하여 유체 등의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지시하며, 내부에 스위치를 가져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위치가 동작하는 장치이다. 본 기기는 내압방폭 구조로 설계되었으면 1종 및 2종의 가스 및 증기 방폭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.

3. 인증범위: 본 인증서는 아래의 형식번호에 한하여 유효함

T990 *

4.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

- 주위온도 -20~60℃의 범위내에 설치되어야 함.

5. 인증(변경)사항

해당 없음

6. 그 밖의 사항

- 제조자는 인증기관에 제출한 시료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함.
- 제조자는 고용노동부고시 2010-36 별표 7의3 1호에 따라 본체에 확인시험(수압시험: 시험압력 685.55 kPa)을 실시하여야 함.